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의결안건 제160호 관련)

2021. 12. 1.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12월 1일(수) 14:00~18:21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160호 『NH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위원) ○○○ 부장이 발송한 투자광고 50건과 관련해서 분류(grouping)를 한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저희 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예를 들면 1회차와 8회차의 경우에는 2일 간에 걸쳐서 송부가 됐는데 그중 1·2회차 및 3~6회차 그리고 7·8회차는 각각 서로 수신자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각 그룹별로 수신자가 포섭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 1건으로 간주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음.

○ (위원) 이것을 수신자 관점에서만 분류하셨는지?

▶ (진술인) 그러함. 그리고 9·10회차의 경우에는 14일간에 걸쳐서 2회가 발송이 됐는데 이것이 14일 정도의 간격만 있을 뿐이지, 9·10회차의 수신자 1명을 제외하고 8회차 수신자에 모두 포섭이 됐기 때문에 9·10회차는 동일성이 인정되어서 1건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수신자 중심으로 그렇게 분류(grouping)한 이유는 저희가 보기에는 메일 내용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신

자 중심의 분류(grouping)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자료에는 내용이 예를 들어 투자기간이라든가, 수익률이라든가, 모집 설정이라든가, 가입조건이라든가, 이런 내용과 대상펀드가 몇 호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파악하신 것 중에 ○○○ 부장이 발송하신 광고 건이 그 메일 상에 펀드명 적시가 되어 있는지?

- ▶ (진술인) ○○○ 부장이 발송한 58건의 메일 중 회차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2건임. 나머지는 회차 기재 없이 그냥 ○○○○펀드의 상품명, 기간, 목표수익률, 가입가능금액, 투자대상, 위험성, 모집일 등을 그냥 간략히 나열해서 보낸 것들임.

- (위원) 그러면 기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 2019년 7월8일에 보낸 것하고 2019년 12월12일에 보낸 것이 대상펀드가 동일한 것인지?

- ▶ (진술인) 회차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펀드들의 일반적인 기간이라든지, 목표수익률 등을 그냥 기재한 것으로 보임.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펀드라는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단일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상당한 기간'에 대한 것은 여전히 7영업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 ▶ (진술인) 그러함.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감독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이 7영업일이었고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음.
- (위원) 그런데 감독당국이 유권해석을 했을 때 '상당한 기간 (사안에 따라 개별적 판단 필요)'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음. 그런데 NH투자증권(주)의 전신인 우리투자증권에서 해당됐던 내용은 CP이고 본 건은 사모펀드임. 그래서 굳이 CP와 사모펀드를 놓고 보면 어떤 것이 더 엄격하게(rigid) 규정을 따라 가야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 ▶ (진술인) 물론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투자관계이기 때문에 이쪽저쪽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기준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영업을 하고 투자권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투자광고를 2,800명 이상은 1유형, 2,400명~2,600명 사이를 2유형으로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두 유형의 수신인이 완전히 다른 수신인인지 아니면 유사한 수신인인지?
- ▶ (진술인) 완전히 다르지 않은 겹치는 투자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음. 왜 이분이 그렇게 다른 수신자 명단 (mailing list)을 유지하고 했는지는 저희도 약간 의문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겹치는 상황으로 볼 때 2개의 수신자

명단(mailing list)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그때그때 붙여서 보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희도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일탈적인 발송(mailing)이었다고 파악이 되고 있음.

- (위원) 펀드 가입과 관련해서 가입시 확인받는 것이 원칙임. 당연히 가입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을 5영업일이 됐든 7영업일 됐든 7일이 됐든, 그 안에 확인을 받으라는 것이 원칙은 아님. 그래서 5영업일이든 7영업일이든 7일이든 그 기간 내에 확인을 하면 된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취지가 아니라, 지연확인이 불가피한, 가입시 확인을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이것이 미확인에 해당되는지 또는 지연확인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적으로 상당한 기간으로 보는 기준을 5영업일이 됐든 7영업일이 됐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지, 불가피한 경우가 전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5영업일을 기준으로 해서 5영업일 안에만 확인하면 이것은 미확인도 아니고 지연확인도 아닌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함. 회사 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진술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함. 저희 회사도 이 설명내용 확인 의무 부분이 고객과 판매사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일에 확보할 수 있으면 당일에 하는 것이 고객이나 저희 직원을 보호하는데 최고로 적합하다고 생각함. 그렇지만 당일에 확인하기가 불가할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 기일이 7일이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더 단축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자는 취지에서 5일로 둔 것이지, 5일 동안 안 받아도 된

다는 취지는 전혀 아님. 사모펀드 특성 자체가, 공모펀드 같은 경우 신고서를 내고 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하는 것과 달리 상품이 신탁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하더라도 최대한 당일에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5영업일 이내에 무조건 해결해 오라는 뜻이지, 5영업일이 원칙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음.

-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표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5영업일, 7영업일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일 가입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후에 규정위반, 가입시 확인이라는 그 원칙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7영업일이 영속적인(permanent) 것도 아니고 5영업일이 영속적인(permanent) 것도 아님. 때에 따라서는 지연확인의 기준이 1영업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0영업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임. 그래서 내규에 7영업일을 감독당국의 기준으로 지연확인을 했지만 제재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보다 더 당겨서, 물론 우리투자증권 시절의 경험에 의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5영업일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내규에 명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가입시에 확인하는 것이 무조건 원칙이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 하루라도 빨리, 그 다음날이라도 무조건 확인을 받으라는 것 정도가 내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5'나 '7' 이런 숫자는 사후 제재시에 감독당국에서 어느

정도 재량으로 지연확인에 대한 기준을 세울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이지, 금융회사가 사전에 그것을 지연확인을 하더라도 5일 이내이면 된다고 사전적으로 내규에 명시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진술인) 맞음. 저희도 과거 엘아이지건설 CP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최대한 문제를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서 규정을 만든 것이지, 당일에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은 이번 ○○○○ 사태 이후에 녹취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녹취를 통해서 당일에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음. 아울러 저희 내규도 당연히 개정할 계획임. 왜냐하면 당일 원칙이고 당일 녹취로 하는데 5일을 둘 이유가 없음. 무조건 녹취로라도 당일에 마무리한다고 원칙적으로 변경을 할 생각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를 할 계획임.
- (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상품 판매 절차와 관련한 NH투자증권(주)의 프로세스에 큰 개선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

▶ (진술인) 아시다시피 이번 ○○○○ 사태는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사기(Ponzi Scheme)를 능가하는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생각을 함. 저희 회사가 불행하게도 그 비즈니스에 연결이 되어서 많은 투자자라든가, 금융당국이라든가, 자본시장에 불미스러운 오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대오각성(大悟覺醒)을 할 계획임.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증선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설명내용 확인의무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설명내용 확인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자와 판매사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issue)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투자자한테 설명내용 확인을 받았다는 날인을 받으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음. 그리고 일반투자자 환매 이전에 이 세분의 고객들께서 저희 직원들한테 “내 사정으로 인해서 당신들한테 확인을 못 해줬다.” 하는 증명을 해줬음. 사모펀드의 경우 가장 큰 취지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이 기본 목적인다고 이해하고 있음. 특히, 저희 고객들께서 담당직원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문제라고 확인해 주셨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음. 그리고 투자광고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음. 저희 회사가 EMS 시스템을 갖고 문제를 막고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100% 다 적출(filtering)하지는 못했음. 몇 사람이 일탈한 부분을 저희들이 방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메일링시스템(mailing system)을 개선하고 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모두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저희 직원이 몇 호 펀드라고 파는 것이 아니고 그냥 “○○○○라는 펀드가 있습니다.”라는 정도로 아마 광고한 것 같음.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권유행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 못

한 것 같음. 회사도 메일링시스템(mailing system)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부분은 있음.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정리할 계획이고 이미 실시하고 있음.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광고와 관련되어 할 말은 없지만 선처해 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자본시장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하겠음.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는 재무적 KPI가 없는 회사임. 다행히 그러한 결과로 저희 회사가 불완전 판매 이슈 발생이 거의 없는 상태임. 왜냐하면 저희들은 고객을 잘 이해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직원한테 우수평가를 주는 내부적인 평가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결과보다는 좋은 과정을 갖고 고객을 대응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임. 아울러 이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투자자들에게 손실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큰 이슈였다고 이해하고 있음. 그 부분도 일반투자자들은 저희들이 전액 보상을 했음.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의 이슈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되었고 저희 회사 스스로도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고, 또한 고객들한테도 좀 더 도움이 되는 회사로 거듭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 이 부분을 감안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선처해 주신다면 자본시장 발전에 저희들이 더욱더 도움이 되고 선도하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음.

▷ 진술인이 퇴장함.

(17시48분 정회)

(18시16분 속개)

- (위원장) 제160호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음. 의결안건 제160호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NH투자증권(주)에 대해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였음. 먼저,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금감원은 NH투자증권(주)이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상당한 기간 내에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7영업일을 상당한 기간으로 보고 7영업일을 초과한 위반건수 3건을 기준으로 舊자본시장법 제47조제2항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에 따른 총 2억 1,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였음. 설명내용 확인은 사모펀드 가입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위원회는 예외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가입시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설명내용 확인 의무를 이행했다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음. 금번 NH투자증권(주)의 경우에도 가입 당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모두 위반으로 봐야할 것이지만, 과거 설명내용 확인의무 이행 관련 상당한 기간을 7영업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과거 제재 사례를 고려하여 내규를 운영한 점을 감안할 때 제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재대상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바 본 건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을 7영업일로 적용하여 위반건수를 3건으로 판단하였음. 하지만 향후 시장에서 7영업일 이내에 확인을 받으면 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원칙적으로는 가입 당시 설명내용을 확인받도록 하고, 추후 확인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등 보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금감원이 위반으로 지적한 3건과 관련하여 사모펀드 가입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설명내용 지연확인도 설명내용 미확인과 마찬가지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지연확인한 이유가 고객 측의 사정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반동기 감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에 증선위는 총 3건에 대해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변경하여 과태료를 일부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다음으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금감원은 NH투자증권(주)이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누락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 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발송한 행위 총 55건에 대해 舊 자본시장법 제57조제6항 및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의 투자광고 규정 위반으로 총 55억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건의하였음. 사모펀드 투자광고시 적격투자자 여부는 일자별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건의한 바와 같이 투자광고 규정 위반 여부를 일자별로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본 건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명의 직원이 동일 수신인에 대해 동일 펀드, 동일 내용의 광고를 발송한 것으로 판단되는 5건은 행위의사의 단일성, 시간·장소의 근접성이 인정되어 이미 위반 건수에 포함된 건과 동일한 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증선위는 해당 5건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